

<의안번호 제2007-26호>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9.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9. 20.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안 제3조).

- 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본인 및 본인과 친족의 관계,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마. 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안 제9조).

-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 연차보고서를 제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9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변경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제6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2007. 6. 2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한 조항이며,
 - 조례안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규정도 2006.12.28.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서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1) 조례안 제2조(구성)제1항제1호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이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3항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조례안의 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로 규정하지 않고 법령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교육자를 제외하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현황(2007. 10월 현재)

- 윤리위원 5명 : 5명(법관1, 군의원 1, 공무원1,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2)
- 교육자 : 없음(교육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재 미위촉)

(2) 조례안 제3조(기능 및 관할)제2항 본문 중 ‘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항제6호에서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5조의2 관련 별표 1의2 규정에서 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연구직·지도직,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별시·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

윤리위원회	관할 공무원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가.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자 다. 시군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事項의 審査)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등록義務者가 등록財産의 일부를 過失로 漏落하거나 價額合算등에 誤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義務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財産登録書類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義務者에게 資料의 제출요구 또는 書面質疑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職者倫理委員會는 등록義務者에게 解明 및 疏明資料提出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團體 기타 公共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機關·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거부할 수 없다.<改正 1994.12.31>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人的事項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新設 1994.12.31, 1997.12.31, 2006.12.28>

⑥公職者倫理委員會는 등록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録事項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陳述을 받을 수 있다.

⑦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⑧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 公職者倫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4.12.31>

⑨第8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查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人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4.12.31>

⑩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申告事項을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한 후 3月이내에 財産公開對象公職者 全員에 대한 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⑪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産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結果를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4.12.31>

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조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6.12.28>

⑭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6.12.28>

⑮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제8조의2(審査結果의 처리)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審査結果 登錄對象財産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過失로 漏落 또는 誤記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號의 1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4.12.31, 2001.1.26, 2006.12.28>

1. 警告 및 是正措置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
3. 日刊新聞 廣告欄을 통한 虛偽登錄事實의 公表
4. 解任 또는 懲戒(罷免을 포함한다) 議決要請

②제1항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

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 또는 오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措置중 第3號의 措置는 다른 措置에 부수하여 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때에는 이를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新設 1994.12.31, 2006.12.28>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第9條 (公職者倫理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政府·地方自治團體 및 特別市·廣域市·道教育廳에 각각 公職者倫理委員會를 둔다.<改正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財産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結果의 처리
2. 第8條第1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
3.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사항

②각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改正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1. - 4. 생략
5. 特別市·廣域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 8. 생략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은 法官, 教育者, 學識과 德望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5人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3人은 法官, 教育者, 學識과 德望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1993.6.11, 2001.1.26>

④公職者倫理委員會의 委員의 任期·選任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定한다. <新設 1993.6.11, 1997.12.13>

1. - 5. 생략
6. 特別市·廣域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 및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와 特別市·廣域

市·道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이 法과 第4項 各號에 規定된 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新設 1993.6.11>

第17條 (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等에의 就業制限<개정 2001.1.26>)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 또는 職務分野에 종사하였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退職日로부터 2年間 退職前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一定規模 이상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이하 "營利私企業體"라 한다) 또는 營利私企業體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第20條의2 (국회 등에의 보고 <개정 2006.12.28>)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第1項의 年次報告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3.6.11]

第21條 (委任規定)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1991.11.30, 1993.6.11>

第22條 (懲戒등)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1994.12.31, 2001.1.26, 2005.5.18, 2006.12.28>

1. - 8. (생략)

제24조부터 29조까지 (생략)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7.6.21]

제1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4.12.31, 2005.2.11, 2007.6.2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21>